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의 오기와 문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반영에 따른 수의계약 및 겸직 관련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반복되는 법령명 및 문구 사용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 다. 법률명 오기 정정(안 제6조)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문구 등 정비
- 마. 「보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8. 10. ~ 8. 14.(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850-5819)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7)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으로,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을 “의원 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복리 증진”을 “복리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를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로 한다.

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군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해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지역구), 겸직기관 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주식 보유율·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된다**”를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겸직 사항과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을 “**겸직사항을**”로, “**신고 해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을 “**검직 기관 · 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를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6조 단서 중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않는다**”를 “**않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인**”을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 ·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계 등)**”을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② 징계기준 등은 「보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검직 미신고 · 허위신고 · 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규정-----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2조(윤리강령)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보성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 의원-----.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 복리증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
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 3. (생략)

4. 지위를 남용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신 설>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 모든 공
 . 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
 -----.

제3조(윤리실천규범)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특히 군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
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
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
은 지양해야 한다.

5.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
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
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 설>

<신 설>

5. ~ 8.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6.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 장” 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 하는 업무가 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 우 겸직 직위의 휴직·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 지해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 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 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 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주식 보유율·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

8. ~ 11.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제4조(윤리심사 등) ① -----

--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해서는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심

로 정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
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직을 가
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개월 이
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보
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
과 검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검직사항
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
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
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
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겸

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
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
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
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
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
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 법 제43조제3항-----
----- 검직사항을

----- 신고
해야 ----. 검직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
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
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
를 해야 한다.

④ -----
----- 검직 기관
· 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
-----.

⑤ -----
-----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
다고 인정할 때에는 -----

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는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관리인이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생략)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
-----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않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

-----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
직원)---.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징계)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 설>

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② 징계기준 등은 「보성군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검직 미신고·허위신고·신고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보성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과 검직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검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 · 단체

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⑦ 겸직 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는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보성군수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 -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때하지않음 등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 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사람) -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때하지않음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공개사과, 출석정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보성군의회 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협회 및 단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 월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 율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 의원 (인) 보성군의회 의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재정 수반요인: 해당없음

○ 미첨부 근거규정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미첨부 사유

본 의안은 보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장 외 7인